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11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 : 2021년 10월 20일
- 라. 상정일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 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2021.12.31.자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요청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위탁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양육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보급 등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위탁기간 : 2022.1.1. ~2023.12.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소요예산 : 193백만원(2021년)
  - 인건비 110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사업비 7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민간위탁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위탁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년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 선정방식 : 재계약((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소요예산 : 193백만원(2021년)
  - 인건비 110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사업비 7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現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8.95㎡	20.1.1.~ 21.12.31.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이하 '아동인권센터')에 위탁한 사무는 대상별(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양육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양성, 콘텐츠 개발, 문화학산, 인권컨설팅 등이며, 재계약으로 2년간 위탁할 계획이고, 위탁방식은 사무형 위탁으로 추진예정에 있음.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위탁한 사무 〉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과정 운영(어린이·청소년 당사자, 공무원,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양육자, 일반시민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 민간위탁의 유형

- 예산 지원형

① 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임차 시설과 서울시 사무를 수탁법인·단체 등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② 사무형 위탁 :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등의 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수익 창출형 :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2014.6.27.~2015.12.31. 국제아동인권센터 최초 위탁(1.6년, 공개모집)
- 2차 2016.1.1.~2016.12.31. 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1년, 재계약)
- 3차 2017.1.1.~2019.12.31. 국제아동인권센터 재위탁(3년, 공개모집)
- 4차 2020.1.1.~2021.12.31. 국제아동인권센터 재계약(2년, 재계약)

- 인권아동센터는 2014년부터 총 4차에 걸쳐 8년간 본 사무를 수탁하고 있으며, 본 사무는 법인직원 3명을 포함한 6명과 강사진 등(강사 39명, 외부 연구원 1명) 46명이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7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관련 2021년 예산편성액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계	192,800	244,132	△ 51,332	△ 21.0%
인권교육사무	176,800	220,632	△ 43,832	△ 19.9%
인권컨설팅	16,000	23,500	△ 7,500	△ 31.9%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관련 2021년 세출총괄표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계	192,800	244,132	△ 51,332	△ 21.0%
인 건 비	93,046	91,541	1,505	1.6%
물 건 비	8,660	12,332	△ 3,672	△ 29.8%
경상이전	16,924	16,614	310	1.9%
사 업 비	74,170	123,645	△ 49,475	△ 40.0%

〈 국제아동인권센터 현황 〉

- 명 칭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901호
- 설립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외 인식확대를 도모하고 아동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동인권의 이행을 촉진
- 주요사업 : 아동인권교육, 아동인권 전문강사 양성, 아동인권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아동 참여증진 사업, 아동인권증진 캠페인, 아동권리포럼, 아동인권 네트워크,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 연구 자문/컨설팅 활동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평생교육국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인권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은 인권 관련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인권을 인지하는 능력과 이를 보호·보장하는 행동능력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인권관련 인지와 행동을 위한 교육은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인권은 자신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으로,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난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존엄, 역사, 사회정의, 장애, 노동, 환경, 공동체 등에서 평등과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센터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전문적인 지식과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 뿐만 아니라 관련 경험이 충분한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 중 비권력적 사무 또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로,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위탁사무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청소년 시설종사자, 아동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과 배포 및 전문 인권강사 양성 등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권교육의 전문성 및 효과성, 재계약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센터는 4개 분야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사인력풀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바, 법인의 전문성과 강사들의 전문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국제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관련 사업계획 〉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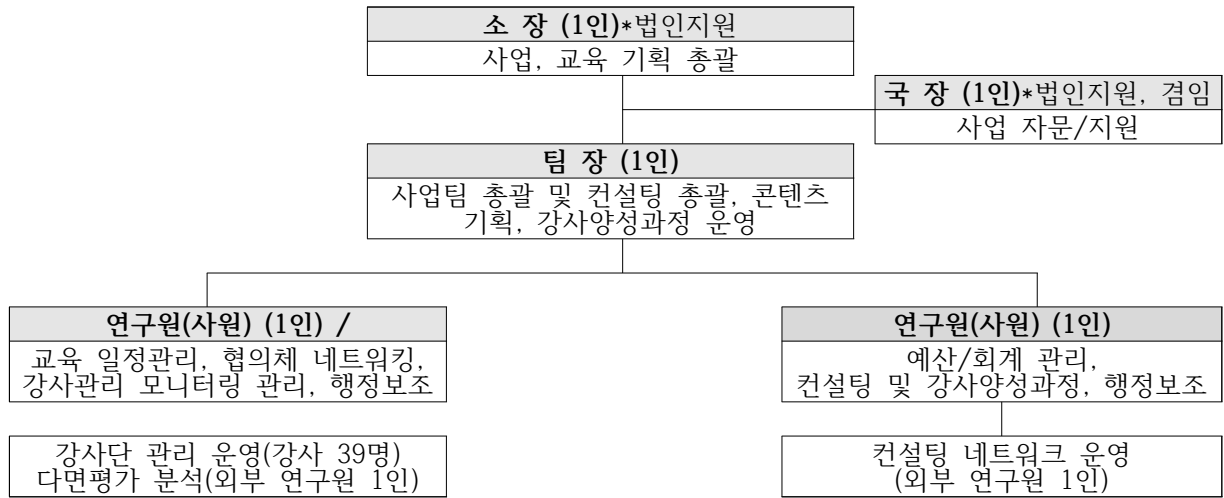
항목		사업내용	목표
4개		7개 세부사업	
대상별 인권교육	인권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230회, 5,650명
	강사양성과정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 및 지원	15명 내외
	강사진 관리	강사진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간담회 3회, 역량강화 4회, 워크숍 8회
	교육 홍보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보 안내	수시
콘텐츠 개발		강의 콘텐츠 보완, 신규 콘텐츠(교구) 개발	5회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46회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 컨설팅	14개소

○ 또한, 본 센터는 시설장 및 사무국장 2인을 법인에서 무보수로 본 센터로 파견하고, 강사관리, 교육 일정관리, 협의체 네트워크 관리 및 행정보조 등을 위해 직원 중 1명을 배정하고 있는바,

- 직원 1명이 파견강사 39명으로 실행하는 인권교육의 품질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본 센터의 역할이 인권교육의 전문성 활용보다 강사수급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



- 평생교육국은 재계약 사유를 “다양한 단체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음”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중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 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제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관련 재계약 사유서 〉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낮음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성상 많은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음
재계약 사유	○ 현재 인권부문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원활한 진행 및 안정적 시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의 특성상 <b>공신력 있는</b>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수의협약이 바람직함

출처 : “국제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사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중 붙임8. 발췌

- 공개모집 시 경쟁 가능성 등
  - 그간 공개모집(2회) 결과 1개 법인이 단독 응모하였던 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성상 많은 법인업체의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음

출처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재계약 심의의뢰서 발췌

-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쟁 속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관련 업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사업방식으로, 경쟁이 없거나 적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교육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경쟁이 적은 분야에서 설립 후 10년 내외의 기관을 전문성이 아닌 공신력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나, 본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위탁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본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사무위탁의 핵심은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전문성’과 ‘외부강사의 전문성’은 상이할 수 있고, 평생교육국은 근거없이 이를 동일시하여 실제 인권교육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단체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의 전체를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는바,
  -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은 강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실제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여 인권 교육 시행 횟수로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인권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콘텐츠 개선 등을 위하여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기준인 전문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본 민간위탁은 강사과제 사업이 아닌 인권교육 사무임을 명확히 하여 수탁 기관의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관리지침(2021. 10.) 및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정례회 전 동의안 의결을 받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주의를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은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운영평가위원회 회차 선택

▶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 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 20p 발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1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나.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다. '21.12.31.자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요청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나. 위탁내용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양육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보급 등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22. 1. 1. ~ '23. 12. 31.(2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국제아동인권센터)

바. 소요예산 : 193백만원('21년)

- 인건비 110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사업비 74백만원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 구인순(☎ 2133-4135)